

〈 기말고사 결사사유 인정기준〉

인정범위		제출 증빙 서류	인정기간
① 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, 형제, 자매	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	시험일 이전5일(시험일 포함) 이내 (단, 형제·자매는 3일 이내)
② 출산	본인	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시험일 이전 30일(시험일 포함) 이내, 이후 5일 이내
	배우자	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	시험당일
③ 입원	본인의 질병	① 입·퇴원 증명서	시험당일 포함
④ 각종사고	본인의 교통사고, 자택화재, 천재지변	① (공공기관발행)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(보험회사)	시험당일
	응급환자	① 진료확인 증빙서류	시험당일
⑤ 법정전염병 (제 1, 2, 4군)	본인의 질병	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	시험일 이전 5일(시험일 포함) 이내
⑥ 국외출장	공무상 국외출장	① 국가(공공기관 포함)기관 및 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② 출·입국사실확인서 (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)	시험당일 포함
⑦ 비상근무	공무원의 비상근무, 공익 사업장 비상근무, 국가 행사 동원 근무	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서류 (소속기관장 발행)	시험당일
⑧ 결혼	본인	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	시험당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과 형제자매	① 청첩장 또는 예식확인 증빙서류 ②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부모기준,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부모 기준 발급)	
⑨ 시험응시	자격(검정) 시험, 각종 채용 시험 응시	① 수험표 또는 기타 응시확인 증빙서류	시험당일

◎ 단,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제3장 “비상근무” 규정에 따르며, 소방·경찰·군인·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 비상근무 명령에 의함.

◎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공결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.

◎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.

※ 제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처리함.